

2020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 비자 선발 계획 안내

'20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비자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. 알려드립니다.

- **선발(예정)인원** : 125명(연간 총 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)
- **신청기간** : '20. 4. 6.(월) ~ 8.(수), 3일간
- **서류제출 방식**
 - 관할출입국·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
 - ※ 예약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되도록 예약 후에 방문하기 바람
- **결과발표**
 - 4월 17일, 10시 (예정),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
- **총점 순으로 고득점자에 대해 우선 선발(쿼터 배정)하므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 - 동점자 선발 기준
 - ▶ 1순위 : 범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
 - ▶ 2순위 : 한국어 능력(TOPIK, KIIP)이 우수한 사람
 - ▶ 3순위 :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
 - ▶ 4순위 : 연령이 적은 사람
- **신청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으며,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.**
 - ※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므로 필수서류 보완기간도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합니다.
- **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·철회 등이 제한되며,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며,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**
- **신청 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.**

<붙임 1> 2020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평가 항목

□ 적용대상 :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-9, E-10, H-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

- 제외 : 형사범, 세금체납자,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

<참고> : 형사범은 벌금형(벌금액 50만원 이상)이상을 말하며,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

□ 점수요건 :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

1. 산업기여가치 '연간소득'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
2.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

가. 기본항목 : 최대 90점

1) 산업 기여 가치

◆ 연간소득 : 최대 20점

| 구 분 | 3,300만원 이상 | 3,000만원 이상 | 2,600만원 이상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배 점 | 20 | 15 | 10 |

<범례> :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,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(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)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

2) 미래 기여 가치

◆ 숙련도 : 최대 20점

| 구 분 | 자격증 소지 [㉠] | | | 기량검증 통과 [㉢]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기사 | 산업기사 | 기능사 | |
| 배 점 | 20 | 15 | 10 | 10 |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㉠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"기술기능분야" 기술자력에 한함

㉢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

◆ 학력 : 최대 10점

| 구 분 | 학사 | 전문학사 | 고졸 |
|-----|----|------|----|
| 배 점 | 10 | 10 | 5 |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

◆ 연령 : 최대 20점

| 구 분 | ~ 24세 | ~ 27세 | ~ 30세 | ~ 33세 | ~ 36세 | ~ 39세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배 점 | 20 | 17 | 14 | 11 | 8 | 5 |

◆ 한국어능력 : 최대 20점

| 토픽(TOPIK)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5급/5단계 이상 | 4급/4단계 이상 | 3급/3단계 이상 | 2급/2단계 이상 |
| 20 | 15 | 10 | 5 |

<참고> : 토픽은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,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

나. 선택항목 : 최대 110점

◆ 근속기간 :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

<범례> :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,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,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같음

◆ 보유 자산 : 최대 35점

| 구 분 |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[㉠] | | | 국내 자산 [㉡]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1억원 이상 | 6천만원 이상 | 3천만원 이상 | 1억원 이상 | 8천만원 이상 | 5천만원 이상 |
| 배 점 | 15 | 10 | 5 | 20 | 15 | 10 |

<참고> : ㉠와 ㉡간 중복 산정 가능(단, 이 경우 ㉡는 ㉠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)

<범례> : ㉠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
 ㉡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(토지/주택/건물)만 해당
 ㉠와 ㉡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: 최대 15점

| 구 분 |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[㉠] | | 일반 제조업, 건설업 분야 등 [㉡]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6년 이상 | 4년 이상 | 6년 이상 | 4년 이상 |
| 배 점 | 15 | 10 | 10 | 5 |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㉠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: 최대 10점

| 구 분 | 국내 교육경험 [㉠] | | 국내 연수경험 [㉡]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학사이상 취득 | 전문학사 취득 | 1년 이상 | 6개월~1년 미만 |
| 배 점 | 10 | 8 | 5 | 3 |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㉠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지만 해당

㉡는 국내 사설기관연수(D-4-6)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

◆ 가점 : 최대 40점

| 구 분 | 국내 유학경험 ㉠ | | | 관련 중앙부처 추천 ㉡ | 읍, 면지역 근무경력 ㉢ | | | 사회 공헌 ㉣ | | 납세실적 (300만 원이상) ㉤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석사 이상 | 학사 이하 | 전문 학사 | | 4년 이상 | 3년 이상 | 2년 이상 | 표 창 | 사회 봉사 | |
| 배 점 | 10 | 5 | 3 | 10 | 10 | 7 | 5 | 5 | 3 | 5 |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

<범례> : ㉠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'학위소지' 및 '학력'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(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)

㉡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,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

㉢ 읍,면지역 기준 :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, 면지역에 위치할 것

경력 산정 기준 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,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

㉣ (훈·포장/표창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(건당 2점, 최대5점), (자원봉사)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(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-청장,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) : 표창/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(어느 하나만 적용)

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

다. 감점항목 : 최대 50점

| 구 분 | 출입국관리법 위반㉠ | | | 기타 국내 법령 위반㉡ | |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1회 | 2회 이상 | 3회 이상 | 1회 | 2회 이상 | 3회 이상 |
| 배 점 | 5 | 10 | 50 | 5 | 10 | 50 |

<참고> : 항목 간 합산(㉠+㉡)점수를 적용함

<범례> : ㉠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(처분면제, 과태료 포함)하며,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

㉡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

라. 업종.업체별 허용인원

|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| | 1명 | 2명 | 3명 | 4명 | 5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조업 (국민피보험자 수) | 일반 | 10 - 49명 | 50-149명 | 150-299명 | 300-499명 | 500명 이상 |
| | 뿌리 | 5-9명 | 10-29명 | 30-49명 | 50-99명 | 100명 이상 |
| 건설업 (연평균 공사금액) | | 50억원 미만 | 50-300 억원 미만 | 300-500 억원 미만 | 500-700 억원 미만 | 700 억원 이상 |
| 농축어업 (국민피보험자 수) | | 30명 이하 | 31-99명 | 100명 이상 | - | - |

<참고> 단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

<붙임 2>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신청자 유의사항

- 동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직장을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신청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붙임 하단의 『점수제 전환 심사표』(별첨1)를 작성하여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인 또는 근무처 등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·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업체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쿼터 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업종,업체별 허용인원과 별개로 내국인 전체 고용인원의 20%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,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에는 특정활동(E-7), 거주(F-2) 체류자격자를 모두 포함합니다.
 - ※ 단, E-9, E-10, H-2, F-4, F-5, F-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
 - 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공증 받은 원본서류(예 : 재발급이 어려운 학위증 등)를 이미 법무부에 제출한 경우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,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를 ‘점수제 전환 심사표(별첨1)’ 심사내용에 기재하여야 됩니다.
- 점수항목에 포함된 학력, 자격증, 한국어 능력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추후 기간연장 시 점수가 부족하여 한국어, 학력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자격변경 이후 변화된 사항(자격변경 이후 학력변화, 연수, 한국어능력 검증 등)만 인정하므로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기본항목에서 한국어 점수, 학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점수제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
 - 잦은 이직 등으로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 비자는 임금요건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

- 정부의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이 확인될 경우 체류허가 등이 제한됩니다.

<참고 : 2020년 쿼터 안내>

| 구 분 | | 쿼터 | 요건 | 선발 방식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|
| 일반쿼터 | | 500명 | 점수표 상 점수요건 충족 | 분기별 선발 |
| 별도쿼터 | 고득점 | 200명 | - (외국인 요건) 아래 둘 중 하나 충족 △ 산업기여가치 '연간소득' 점수가 10점 이상이며, 총 득점이 65점 이상 △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, 총 득점이 72점 이상 | 선착순 접수 |
| |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| | - (업체요건)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(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)가 평균 10% 이상 증가한 업체 - (외국인요건) 점수표 상 점수요건 충족 | |
| | 관계부처 추천 | 300명 | - (업체요건) 내국인 구직기피직종으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기업 - (외국인요건) 점수표 상 점수요건 충족 | |

〈붙임 3〉 점수제 항목별 기준 및 제출서류

가. 기본항목

1) 산업기여 가치

◆ 연간소득 :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(전년도 2년간)

-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2년 연속 2,600만원을 넘어야 함
- 2020년 상반기 신청자 : 2017,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- 2020년 하반기 신청자 : 2018,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
※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소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

2) 미래기여 가치

◆ 숙련도

① 자격증 : 해당 자격증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

② 기량검증 :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(통과) 증서

※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'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(☎ 02-2183-1635)'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

◆ 학력 : 학위증(전문학사이상) 또는 졸업장(고졸)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-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(기술학원 졸업증, 기술교육 이수증,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) 단,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※ 정규과정(4년 이상 출석수업)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, 온라인대학, 개방대학,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

-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(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)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

◆ 한국어능력

- 토픽 :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
-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: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

나. 선택항목

◆ 근속기간

-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최대 10점을 부여(월은 버림)
-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
-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음

◆ 보유 자산

① 정기적금 :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(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)

※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② 부동산소유 :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)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분야 근무경력 :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(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) 또는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

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(또는 농축어업)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

- 뿌리산업분야인 경우에는 업체의 뿌리기업확인서 추가 제출
-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(임의양식)를 작성하여 법무부에서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

- 뿌리기업의 경력기산 기준

: 발급일로부터 경력을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뿌리기업 확인서(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) 상 별도의 영위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경력을 기산할 수 있음

※ 사업개시일은 뿌리기업확인 기산일이 아님

-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

- ① 국내 학위취득 : 학위증 사본(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- ② 국내 사설연수 :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(교육과정, 교육기간 등 명시)
 -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(D-4-6)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(출석율 80% 이상)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

◆ 가점

- ① 국내 유학경험 : 학위증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- ②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: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
 -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
 - 현재 고용추천 중인 중앙부처(4개 부처) : 고용노동부,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- ③ 읍·면지역 근무경력 : 해당 업체발급 경력(재직)증명서*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* 소재지 명시,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분야 명시
- ④ 사회공헌
 - 표창 : 표창장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 - ※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서 정부표창을 의미함, 그러므로 감사장, 공로패 등은 제외
 - ▶ 표창은 국가기관(중앙부처의 장) 및 지방자치단체장(국회의원, 지방의회, 글로벌센터장, 부시장, 다문화센터장 등 표창은 제외)명의로의 정식표창을 의미
 - ▶ 동일 기관장 명의로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,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
 - ▶ 사회봉사 :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(☎1365)발급 실적확인서, 단,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(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)
- ⑤ 납세실적 :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

◆ 감점항목

- ② 필요시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<별첨1> 점수제 전환 심사표 - 신청인 작성 서식

[참고서식]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(E-7-4) 항목별 심사표

(주의)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·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|--|
| 성명 | | 등록번호 | |
| 회사명 | | 국적 | |
| 기본요건 |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-9 국내 정상 취업 여부 () | | |
| 점수요건 | ① 산업기여가치 ‘연간소득’ 10점 이상 총 득점 52점 이상 ()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점수가 35점 이상 총 득점 72점 이상 () | | |

| 구분 | | | 평가점수 | 심사내용(입증서류 등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기본 항 목 | 산업기여가치(연간소득) | | | |
| | 미래 기여 가치 | 숙련도 | 자격증소지 | |
| | | | 기량검증 | |
| | | | 학 력 | |
| | | | 연 령 | |
| | | | 한국어 능력 | |
| 선 택 항 목 | 근속기간 | | | |
| | 보유 자산 | | 정기적금 | |
| | | | 국내자산 | |
| | 근무 경력 | | 뿌리산업분야 | |
| | | | 일반제조업 등 | |
| | 교육, 연수 | | 교육경험 | |
| | | 연수경험 | | |
| 가점 | | | 국내유학경험 | |
| | | | 부처 추천 | |
| | | | 읍면지역 근무 | |
| | | | 사회공헌 | |
| | | | 납세실적 | |
| 감점 | | | 출입국관리법 위반 | |
| | | | 기타 국내법 위반 | |
| 총점 | | | | |

작성일 : 2020. . .

작성자 :

(서명)

<별첨2>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

[참고서식]

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

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|--|
| 회사명 | | 사업자 등록번호 | |
| 작성자 | (서명) | 연락처 | |

가. 고용증가율 자료 심사 자료

A(1구간) : 직전 1년간(12개월)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

| 월별 | -1월 | -2월 | -3월 | -4월 | -5월 | -6월 | -7월 | -8월 | -9월 | -10월 | -11월 | -12월 | 평균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상시 고용 인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○ 월별 :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

☞ '18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2개월이므로 '17년 9월 ~ 18년 8월 동안임

○ 상시고용인원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국민 근로자 수

☞ 국민 고용을 의미하며, 외국인(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)은 제외

☞ 인원산정 결과 평균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(12.254 => 12.3명)

B(2구간) : 직전 1년전(전전년) 12개월간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

| 월별 | -13월 | -14월 | -15월 | -16월 | -17월 | -18월 | -19월 | -20월 | -21월 | -22월 | -23월 | -24월 | 평균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상시 고용 인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○ 월별 : 신청일 기준 직전 1년전 12개월간(13개월 ~ 24개월전까지)

☞ '18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3개월~24개월이므로 '16년 9월 ~ '17년 8월 동안임

☞ 평균 인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(10.454 => 10.5명)

나. 심사 결과 (신청자는 이 부분을 작성하지 마세요)

| 구분 | A (직전1년) | B (2년이내) | C 증가율(%) (A-B)/B × 100) | 충족여부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상시 고용 인원 | 12.3 | 10.5 | $(12.3-10.5)/10.5 \times 100 = 17.142$ | 17% 증가 하였으므로 충족 |

☞ C의 증가율은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함 (9.5% => 10% 이므로 요건 충족함)

본인은 상기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, 향후 외국인근로자 기간연장시 자격변경 허가 때 제출한 고용증가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고용 인력에 대해 기간연장이 불허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.

작성일 :

확인자(대표) :

서명

첨부 : 최근 2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빙 서류

* 첨부서류는 심사가 완료되면 허가 수령시 반환하게 되며,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 됨을 알려드립니다.

<별첨3> 신청시 제출서류 (順으로 정리하여 제출)

1.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(필수)
2. 신원보증서(필수)
3. 고용사유서(필수)
4. 표준근로계약서(필수)
5. 점수제 전환 심사표(필수)
6.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(신청자, 2년치 - 필수)
7.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8. 학위증(해당자에 한함)
9. 토픽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(해당자에 한함)
10. 정기적금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1. 국내 자산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2. 재직증명서 및 (관련분야)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13. 고용보험가입자 명부(4대보험 가입자 명부) (필수)
※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
14. 사업자 등록증 사본(필수)
15. 납세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(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, 필수)
16. 뿌리기업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17.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8. 관계부처(고용부, 농림부, 해수부, 산업부) 고용 추천서(해당자에 한함)
19. 사회공헌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20.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(해당자에 한함)